학칙 개정 (안)

1. 개정사유

1) 조기 졸업이 가능하도록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범위와 요건 완화
2) 수업방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자구수정
2)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상대평가 성적분포 비율 완화
3) 융합전공 관련 내용 추가
4)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간제 등록생 별도반 운영 반영
5)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자구삭제

2. 주요골자

1)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 변경 : 제 30 조, 33 조, 39 조
2) 출석수업 비율 제한 삭제 : 제 36 조
2) 상대평가 성적분포 비율 변경 : 제 38 조
3) 전공학점에 융합전공 내용 추가 : 제 45 조
4) 시간제 등록생 별도반 운영 명시 : 제 33 조
5)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자구삭제 : 제 67 조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 30 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 30 조(교과이수단위) ① <현행>	
② 매학기 취득기준학점 및 최대 취득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또는 GAA(Global Access Asia)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자는 3학점 초과하여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 단, ----- ----- **3.0 이상인 자는 6학점 초과하여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내용변경**
③ 학생은 매학기 9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졸업학기에는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단, 졸업연기의 경우에는 필요시 0학점 등록이 가능하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현행>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범위 이내로 하고, 직전 정규학기와 합하여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최대 9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며, 직전 정규학기와 합하여 2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변경**
제 33 조(폐강 및 분반) ①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도 있다.	제 33 조(폐강 및 분반) ① <현행>	
②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과 합반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과 합반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반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내용추가**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③ 한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은 200명, 실습과목은 60명으로(단, 평생교육 실습과목은 40명) 하고, 초과 시 분반한다. 실습과목은 현장실습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과목으로 한다.</td><td>③ <현행></td><td></td></tr>
<tr><td>제 36 조(출석인정) ① ~ ③ <현행>
④ 원격수업의 보조방법으로 20%이내에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현행></td><td>제 36 조(출석인정) ① ~ ③ <현행>
④ ------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
⑤ <현행></td><td>자구삭제</td></tr>
<tr><td>제 38 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 학습활동 등을 종합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등급</th><th>성 적</th><th>평점</th><th>상대평가 비율</th></tr>
<tr><td>A+</td><td>95~100</td><td>4.5</td><td rowspan="2">20 ~ 30%</td></tr>
<tr><td>A</td><td>90~94</td><td>4.0</td></tr>
<tr><td>B+</td><td>85~89</td><td>3.5</td><td rowspan="2">20 ~ 40%</td></tr>
<tr><td>B</td><td>80~84</td><td>3.0</td></tr>
<tr><td>C+</td><td>75~79</td><td>2.5</td><td rowspan="4">20 ~ 60%</td></tr>
<tr><td>C</td><td>70~74</td><td>2.0</td></tr>
<tr><td>D+</td><td>65~69</td><td>1.5</td></tr>
<tr><td>D</td><td>60~64</td><td>1.0</td></tr>
<tr><td>F</td><td>59이하</td><td>-</td><td>-</td></tr>
</table></td><td>제 38 조(성적) ① <현행>
<table>
<tr><th>등급</th><th>성 적</th><th>평점</th><th>상대평가 비율</th></tr>
<tr><td>A+</td><td>95~100</td><td>4.5</td><td rowspan="2">20 ~ 30%</td></tr>
<tr><td>A</td><td>90~94</td><td>4.0</td></tr>
<tr><td>B+</td><td>85~89</td><td>3.5</td><td rowspan="2">20 ~ 50%</td></tr>
<tr><td>B</td><td>80~84</td><td>3.0</td></tr>
<tr><td>C+</td><td>75~79</td><td>2.5</td><td rowspan="4">20 ~ 60%</td></tr>
<tr><td>C</td><td>70~74</td><td>2.0</td></tr>
<tr><td>D+</td><td>65~69</td><td>1.5</td></tr>
<tr><td>D</td><td>60~64</td><td>1.0</td></tr>
<tr><td>F</td><td>59이하</td><td>-</td><td>-</td></tr>
</table></td><td>표수정</td></tr>
<tr><td>제 39 조(성적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성적
4.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5.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한 경우</td><td>제 39 조(성적의 불인정) ----------
----------.
1. <현행>
2. 27학점- ----------
3. ~ 5. <현행></td><td>자구수정</td></tr>
<tr><td>제 45 조(전공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전공별로 정한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인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항신설</td><td>제 45 조(전공학점) ① <현행>
② <현행>
③ <현행>
④ 융합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인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td><td>항신설</td></tr>
</table>

현 행	개 정	비고
제 67 조(등록금의 반환) ① <현행> ② 등록금 반환 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단, 학기개시일부터는 입학금을 제외한다)	제 67 조(등록금의 반환) ① <현행> ② 등록금 반환 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자구삭제**

4.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